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96호)
-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11호)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691호 · 제2202692호)

2024. 8.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안)	1
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안)	3
I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안)	5
IV.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안)	8
V. 검토의견	9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재옥 · 백종현 · 정희용 · 이인선 · 서천호 · 박성민
엄태영 · 김예지 · 김 건 · 김태호 · 박정훈 · 정성국
구자근 의원(13인)

나. 발 의 일 : 2024. 7. 12.

다. 회 부 일 : 2024. 7. 15.

※ 의안번호 : 169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은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 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음. 뿐만 아니라 시행된 법률이 입법의 의도와 다르게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반

복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준 · 조계원 · 조 국 · 조인철 · 이기현 · 황정아
박홍근 · 윤종균 · 허 영 · 허종식 · 한민수 · 백혜련
정성호 · 이훈기 · 박희승 · 민병덕 · 박수현 의원(17인)

나. 발 의 일 : 2024. 8. 7.

다. 회 부 일 : 2024. 8. 8.

※ 의안번호 : 2611

2. 제안이유

국회는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예상 효과를 심사 이전 단계에서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 · 객관적 · 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3. 주요내용

가. 입법영향분석의 요구 및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안 제79조의4)

- 1)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
- 4)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Ⅲ.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부승찬 · 임오경 · 위성락 · 박 정 · 진선미 · 윤종균

황정아 · 이기현 · 한민수 · 정을호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9.

다. 회 부 일 : 2024. 8. 12.

※ 의안번호 : 2691

2.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의 경우 해당 입법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나 분석이 없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전 입

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이미 2003년에 도입되어 법률안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제안이나 위임규칙이나 시행령까지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활용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은 국회가 중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규제 책정 시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선진형 입법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안 심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3. 주요내용

가.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안 제79조의4)

- 1)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완료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 제출하도록 함.

- 3) 의원은 회신받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시 제출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조하도록 함.
- 4)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IV.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부승찬 · 임오경 · 위성락 · 윤종균 · 박 정 · 진선미

황정아 · 이기현 · 한민수 · 정을호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4. 8. 9.

다. 회 부 일 : 2024. 8. 12.

※ 의안번호 : 269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V. 검토의견

1. 입법취지 및 배경

현재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영향 분석 등 일정한 규제심사 절차를 소관 중앙행정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개혁 업무 전담기관을 통한 규제영향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규제영향분석을 통하여 규제자는 규제의 목표와 관련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고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게 됨.

또한, 피규제자 및 일반 국민은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주요내용, 영향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규제 관련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반면, 현재 국회에 접수된 법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 입법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할 뿐, 별도의 영향분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발의가 법안 통과율 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학계 등에서도 규제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참고로, 2017년 OECD는 한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의 약 90%가 의원발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규제제도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국회에서 규제품질을 상설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¹⁾.

개정안들은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정부입법의 규제영향분석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률안 시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예측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1) 「한국 규제정책, 더 나은 규제를 위한 끝없는 여정」, OECD 규제정책보고서, OECD, 2017, p.17

2.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가. 주요내용

개정안은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의원입법과 입법심사의 질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윤재옥의원안**은 의원이 규제를 신설·변경·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수행하도록 함.

박성준의원안은 의원이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을 국회입법조사처로 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까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지막으로, **부승찬의원안**은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을 국회입법조사처로 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만료 이전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개정하여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을 추가함.

이들 개정안은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분석요청 시점과 필요적 절

차인지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입법조사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분석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1] 개정안의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윤재옥의원안	박성준의원안	부승찬의원안
분석대상	국민 권리 제한 또는 규제 신설·변경·폐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국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법률안
의무여부	의무	재량	재량
분석요청	법률안 발의 전	법률안 발의 시	필요 시
분석절차	①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 향분석서 또는 분석요구 서 제출 ②(분석요구서 제출 시) 위원회 심사 전 의장 및 의원에게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 비용추계제도와 유사	①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 향분석 요구 ②위원회 심사 전 의원 에게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③의원은 위원회에 분석 서 제출	①위원회·의원 필요 시 입법영향분석 요구 ②위원회 심사 만료 이전 위원회·의원에게 입법영 향분석서 제출 ③(의원이 회신받은 경우) 위원회에 분석서 제출
분석사항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 한 객관적·과학적 방 법을 통한 예측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 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 요성 등	구체적인 규정 없음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분석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서 활용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도록 명시		
기타사항			입법조사처 직무에 입법영향분석 추가

[표-2] 국회법 개정안의 조문대비표

현 행	윤재옥의원안	박성준의원안	부승찬의원안
<신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요구 등)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사 전에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요구 및 분석서 제출) ① 국회의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만료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제출하

현 행	윤재옥의원안	박성준의원안	부승찬의원안
	<u>출한다.</u> <u>③ 의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u> <u>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u>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u>여야 한다.</u> <u>③ 의원은 회신받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 시 제출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조하여야 한다.</u> <u>④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 입법영향분석서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표-3]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의 조문대비표

현 행	부승찬의원안
제3조(직무) 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u><신 설></u>	제3조(직무) ----- -----. 6.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법률안 또는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나.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체계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²⁾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을 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함. 구체적으로, 먼저 규제입법의 소관 부처는 법령 입안 검토 시 규제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³⁾하고, 규제심사 대상일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함.

이후,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입법예고기간 중 규제연구센터⁴⁾에서는 비용 검증을 수행함. 필요한 경우 규제조정실 산하 비용분석위원회의 검토·자문을 거칠 수도 있고, 규제조정실은 검증의견을 종합하여 소관 부처에 전달하며, 소관 부처는 검증의견,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과정 등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수정·보완함.

끝으로 소관 부처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심사를 거쳐 내부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요청함.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2.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에 해당 법령이 규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사전 검토의뢰함. 모든 법령안에 대해 제출이 필요하며, 규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제 비대상 확인이 필요함.

4) 경제분야는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분야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소관함.

규제개혁위원회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중요규제 여부를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의결된 경우에는 심사종결하고, 중요규제는 본심사에서 심의함.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심사를 45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표-4] 정부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

절차	담당기관	주요내용
정책입안 및 사전검토	소관부처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	- 법령 제·개정에 대한 초기검토,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논의 -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입법예고 7~14일 전 -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여부 등을 국무조정실과 협의
영향분석서 작성	소관부처	사전협의된 내용으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규제심사 대상여부 등 결정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	-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등을 정식 검토요청 - 규제영향분석서 반드시 첨부, 부실한 작성 등 부적절한 규제영향분석서는 반려될 수 있음
입법(행정) 예고 (20~60일)	소관부처	제·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입법(행정)예고
비용검증 및 중기·경쟁·기술 영향평가 (20~60일, 입법예고와 동시진행)	규제연구센터 (비용 검증) ↓ 비용분석위원회 (자문)	- 규제영향분석서 내 비용분석에 대한 규제연구센터 검증 - 경제분야: 한국개발연구원, 사회분야: 한국행정연구원 - 비용상 중요규제(규제 시행으로 규제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종결
검증의견 종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	규제연구센터 검증의견 및 분야별 영향평가 의견 등 종합
자체심사	소관부처 (자체규개위)	- 국무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이해관계자·관련부처 의견,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수정·보완 - 소관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본심사(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 ※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의결되면 심사종결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23.

다. 검토의견

개정안들과 같이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입법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입법영향분석이 실시되면, 법률안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며, 법률안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회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 심사 시 국회가 고려해야 할 요소, 검토가 필요한 여러 자료의 수집·분석, 대안의 비교·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셋째, 과도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입법과 정책 형성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은 의견수렴 과정 등이 부족하여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함. 입법영향분석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반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의 범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윤재옥·박성준의원안은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 속성을 지닌 의원입법으로 규율한 반면, 부승찬의원안은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법률안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부승찬의원안에 따르면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에 의원입법뿐만 아니라 정부입법, 위원회안(대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정부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제출되고 위원회안(대안)은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입안된다는 점에서, 이들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영향분석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입법영향분석 요구를 재량행위로 할지, 의무행위로 할지 검토가 필요함.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요구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박성준·부승찬의원안과 달리, 윤재옥의원안은 규제 관련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의원의 입법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규제 관련 의원입법에 대하여 입법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법률안 발의단계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⁵⁾.

셋째, 입법영향분석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설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규율하고 있는데, 내용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 비용추계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⁶⁾ 분석방법 등에 차별성을 확보하거나 분석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기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가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국회 소속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5) 제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규제영향분석) 도입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국회의장 의견제시가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음. 당시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3차례 심사(2023.4.6., 2023.7.21., 2023.8.23.)하였는데, 논의 과정에서 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법률안이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해 보면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② 법률안 발의 단계에서의 입법영향분석 의무화는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므로 기존 입법절차의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일례로, 윤재옥의원안 제79조의4제1항은 입법영향분석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①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②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③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등을 규율하고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중복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시행에 따른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필요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는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 중인 ‘법률안 비용추계’와 일부 중복의 여지가 있어 보임.

다만, 이 경우 법체계적 사항의 분석에 관하여 법제실 등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법영향분석 수행기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의견제시가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입법영향분석서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사무처(법제실)와 함께 작성하도록 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안 시행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예측·분석(입법영향분석)’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과 헌법 및 다른 법률·제도 간의 체계적 정합성 분석(법체계 분석)’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⁷⁾

다섯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도록 할 경우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므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한 분석과

7)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영향분석 관련 TF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8월 18일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제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79조의4(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강화 또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분석 2. 법률안과 헌법 및 다른 법률·제도와 체계적 정합성 분석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5